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9월 9일, 이해식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6년 9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6.9.1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해식의원)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생략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개정안 중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소청법」은 공소청 외에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별도의 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종전 검찰청 소속 검사·직원에 대응하는 범위를 명확히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정비함.

아울러, 부칙에서 해당 법률의 개정된 본칙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법률의 제명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법제기준에 맞추어 부칙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공소청 검사·직원”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직원”으로 수정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5항제3호).

나. 부칙에서 개정된 본칙규정을 인용하면서 별도로 표시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삭제함(안 부칙 제2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5항제3호 중 “공소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안 제20조제2항제1호 중 “또는”을 삭제하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 경찰”을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3호 및 제20조제7항제3호의”를 “제8조제5항제3호 및 제20조제7항제3호의”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 격사유 등)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위원 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2. (생략) 3. <u>경찰, 검찰, 국가</u> <u>정보원 직원 또는</u> <u>군인의 직에 있거</u> <u>나 그 직에서 퇴</u> <u>직한 날부터 3년</u> <u>이 지나지 아니한</u> <u>사람</u>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 격사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u>공소청 검사·직</u> <u>원, 중대범죄수사</u> <u>청 수사관·직원,</u> <u>경찰, -----</u> ----- ----- ----- ----- -----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 격사유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 ----- ----- ----- ----- ----- ----- ----- ----- ----- ----- 1.2. (개정안과 같 음) 3. <u>공소청(광역공</u> <u>소청, 지방공소청</u> <u>및 지방공소청</u> <u>지청을 포함한다.</u> <u>이하 같다) 검사</u> <u>·직원, 중대범죄</u> <u>수사청 수사관·</u> <u>직원, 경찰 -----</u> -----

	-----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 ----- ----- ----- ----- -----.	② ----- ----- ----- ----- ----- -----.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1. ----- ----- <u>중대범죄 수사청수사관·경찰</u> ----- -----	1. ----- ----- <u>· 중대범죄 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u>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2. ~ 4. (개정안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③ ~ ⑥ (개정안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⑦ ----- -----	⑦ ----- -----

하는 사람은 위원 이 될 수 없다. 위 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당연퇴직한 다.	----- -----. ----- ----- ----- --.	----- -----. -----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1. 2. (개정안과 같음)
3. <u>경찰, 검찰, 국가 정보원</u>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 나 그 직에서 퇴 직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u>공소청 검사·직 원, 중대범죄수사 청 수사관·직원, 경찰, 국가정보원</u> ----- ----- -----	3. (개정안과 같음)
4. 5. (생 략)	4. 5. (현행과 같음)	4. 5. (개정안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⑧ (개정안과 같음)
	부칙	부칙
	제2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및 시·도자 치경찰위원회 위원 의 결격사유에 관 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	제2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및 시·도자 치경찰위원회 위원 의 결격사유에 관 한 경과조치) ----- ----- ----- -----

	해서는 「<u>국가경찰 과 자치경찰의 조 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u>」 제8조제5항 <u>제3호 및 제20조제 7항제3호의</u>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u>제8조제5항 제3호 및 제20조제 7항제3호의</u>----- ----- ----- ----- ----- ----- -----.
--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3호 중 “경찰, 검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직원, 경찰”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호 중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또는 경찰”을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을 “공소청 검사·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직원, 경찰,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제5항제3호 및 제20조제
7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2. (생략) 3. <u>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4. (생략) ⑥ (생략)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직원, 경찰</u> ----- ----- -----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 ⑤ (생략)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u>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u> 이 있는 사람	1. ----- ----- ----- ----- <u>3급 이상 공무원,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u>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생략)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 ----- ----- --.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1. -----· <u>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u>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⑦ ----- -----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2. (생략) 3. <u>경찰, 검찰, 국가정보원</u>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5. (생략) ⑧ (생략)	-----, ----- ----- -----. 1.·2. (현행과 같음) 3. <u>공소청 검사·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직원, 경찰, 국가정보원</u> ----- ----- 4.·5.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	---